

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3항 중 “5영업일”을 “10영업일”로 한다.

제24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미화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인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3 제28호의4를 제28호의5로 하고 제2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8의4.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마련

별표 3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의2.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

별표 3 제3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4의2. 법 제39조에 따른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

별표 3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3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합병·해산·폐업 및 영업의 양도·양수 인가의 심사

별표 3 제4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6의2. 법 제62조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부족한
자산의 보전 명령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의2(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) ①·② (생략)	제4조의2(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(해당 동일인이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. 이하 제4항에서 같다)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(連名)으로 보고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0영업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4조2(정관변경 등의 보고) ① (생략)	제24조2(정관변경 등의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47조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 (현행과 같음)

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 1.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. ~ 4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미화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인 경우는 제외한다.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 1.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. ~ 4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미화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인 경우는 제외한다.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 1.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. ~ 4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미화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인 경우는 제외한다.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 1.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. ~ 4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미화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인 경우는 제외한다.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

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 1.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2. ~ 4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미화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인 경우는 제외한다.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
---	--